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북테크노파크 종합감사 -

2021. 6. .



처분요구일람표

1.	승진인사 운영 부적정	(통보 및 주의)	3
2.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미 이행	(통보)	6
3.	펀드 출연사업 사업비 반납 부적정	(시정)	9
4.	협상에 의한 계약 정량평가 배점 한도 미준수	(주의)	11
5.	연구장비 활용방안 마련 필요	(통보 및 주의)	15
6.	입주기업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 관리 부적정	(주의)	20
7.	건설공사 하자관리 업무 소홀	(주의)	23
8.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조정금액 정산 부적정	(시정)	26

경 상 북 도

통보 및 주의요구

제 목 승진인사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경북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실

내 용

경북테크노파크(이하 “법인”)에서는 매년 1차례 승진인사를 추진하였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임용장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용장에 적힌 날짜까지 임용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용장을 실제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보고, 또한 사망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고 되어 있다.

「인사관리 규정」 제12조와 제23조에 따르면 승진은 승진 요건을 갖춘 직원 중에서 업무능력과 업적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원장이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승진 전 연봉의 3%에 해당하는 승진급을 승진기준일 연봉에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인사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승진심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승진 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임직원의 승진 등 임용시기에 대해서는 사망에 의한 면직 등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법인에서는 2018년 부터 2020년 까지 3년간 직원의 승진인사를 실시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인사발령 시기는 11월 또는 12월 이였음에도 승진자에 대한 임용일자는 그 해 1월 1일로 적용하는 등 승진임용 일자를 3년간 매년 11개월 정도 소급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승진자의 급여 또한 3년간 48명에게 약 63백만 원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등 승진인사를 부적정하게 실시하였다.

[표] 승진 인사 운영현황

연도별	승진자 수 (명)	단계별 일자			소급적용 일수	소급지급된 급여(원)	비고
		승진심사 (인사위원회)	인사발령	승진일자 (소급적용)			
	48					62,920,895	
2020	8	2020.12.17.	2020.12.21.	2020.1.1.	11개월 21일	10,569,050	
2019	23	2019.12.12.	2019.12.23.	2019.1.1.	11개월 23일	31,983,695	
2018	17	2018.11.12.	2018.11.19.	2018.1.1.	10개월 19일	20,368,150	

한편 법인에서는 기관경영평가, 부서평가, 직원 근무성적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승진심사가 늦어졌으며, 또한 내부 규정인 「인사규칙」 제25조에 승진 기준일은 1월 1일로 명시되어 있고 승진소급 적용에 대한 내부 제한 규정은 없어 위와 같이 승진인사가 이루어 졌으며, 사실상 법인 내부적으로도 소급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2021년도 승진인사에는 최대한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소명하였다.

위 소명에 대해, 승진인사 소급적용은 법인의 내부규정에 제한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및 일반상식을 벗어난다고 여겨지며, 또한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조에 명확히 임용일자 소급 불가 규정을 두고 있어 공공기관 법인에서도 충분히 감안(법인의 체규정에는 공무원 규정을 준수할 근거는 없음) 하여야 한다고 검토되며 따라서 법인의 승진인사 소급적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경북테크노파크원장은

- ① 앞으로 승진인사를 소급하여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승진인사 부적정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미 이행
소 관 청 경북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유희실
내 용

경북테크노파크(이하 “위 법인”)에서는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임직원의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 지침」 제3조의2에 따르면 임직원은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6조의3에 따르면 임직원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임직원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징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감사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감사담당자는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에 대하여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다.

「인사관리규정」 제82조에 따르면 원장은 직원이 관계법령 및 법인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법인은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 확인을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직원은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한편 위 법인에서는 음주운전의 예방 및 점검을 위해 임직원의 운전경력 증명서를 징구할 수 있도록 2019. 11. 31. 법인의 제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위 법인에서는 2021년 경상북도 종합감사 수감을 위해 2021. 3. ~ 4. 기간 중 공문,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해 수차례 직원들의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등 3명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2021. 4. 13. 감사일 현재까지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으며, 위 법인은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근로자는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내부 제규정에 위 법인의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요구에 직원은 따르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직원은 제규정 위반에 해당되며, 제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경북테크노파크원장은

재단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직원(AAA, BBB, CCC)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표] 운전경력증명서 미 제출자 현황

부 서	직 급	성 명	입사일	비 고
계		3명		
□□□□□□□□단	◎◎연구원(○급)	AAA	2006.11.01	
■□■□■□단	◇◇연구원(○급)	BBB	2010.06.21.	
♣♣♣♣♣♣실	◇◇관리직	CCC	2019.07.01.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펀드 출연사업 사업비 반납 부적정

소 관 청 경북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단

내 용

경북테크노파크(이하 “위 법인”)에서는 경상북도와 협약을 통해 2009년 ~ 2016년 까지 8년간 “○○○투자조합 3호(이하 “위 펀드”)” 출연사업을 수탁 운영 하였다.

「법인 정관」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의 회계는 중소기업부가 제정·고시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발생 시점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 수탁사업 운영·관리 지침」 제19조에 따르면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잉여금은 법인에 귀속하여야 하고 잉여금 중에서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이자를 위탁기관에서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①①①①펀드 조성 출연사업 협약서(○○○투자조합 3호)」 제4조와 제5조에 따르면 본 사업의 종료 청산시에는 (을)은 청산 금액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갑)은 청산금을 청산조건에 의거 환수해야 하며, 출연금 환수방법은 “본 사업” 종료 시 현금으로 환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법인에서는 위 펀드 출연사업 종료 시 이자 등을 포함한 청산 금액 일체를 위탁기관인 경상북도에 반납하여야 했다.

한편 위 법인에서는 위 펀드 출연사업이 2016. 2. 25. 만료되어 2016. 12. 28. 청산 절차를 거쳐 회수된 배분금 168,640,679원을 2017. 1. 25. 경상북도에 반납 처리 하였다.

그런데 위 법인에서는 위 펀드에서 발생한 배분금과 이자액 전체를 경상북도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펀드를 운영 중이던 2010. 4. 28. 원금통장에서 당시 발생한 이자액 26,160,498원(현재는 발생 이자액을 포함하여 32,621,000원)을 법인 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이자전용 통장으로 이체한 후 위 펀드 출연금 반납과정에서 이자전용 통장의 전체금액을 누락하였으며, 2021. 4. 13. 감사일 현재까지 경상북도로 반납 조치하지 않고 법인의 장기 미지급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 수탁사업비 업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하였다.

[표] ○○○○투자조합 3호 출연사업 현황

펀드 운영 경과				출자금액	반납금액		비 고
결성일	만료일	청산일	출자금 반납일		既반납 출자금	미반납금 (현재 금액)	
09.02.26.	16.02.25.	16.12.28.	17.01.25.	30억원	168,640,679원	26,160,498원 (32,621,000원)	

조치할 사항 경북테크노파크원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펀드 출연사업 미반납금 32,621,000원에 대하여 위탁 기관인 경상북도에 반납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정량평가 배점한도 미준수

소 관 청 경북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실 외 4개 부서

내 용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2018. 5. 1. 이후(이하 “위 기간”이라 한다) 62건의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였다.

「경상북도테크노파크 예산·회계규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은 법인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기대되는 방법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134호, 2020. 12. 24.)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아래 [표 1]과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항목은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와 가격평가 20점으로 구분되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규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하며, 특히 정량평가는 세부항목 배점이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1)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p>•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p>
	정성적 평가분야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p>• 평가위원이 평가</p>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그런데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위 기간 동안 62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 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 □□□□□□ 해외시장동향 및 만족도 조사분석용역’ 등 16건의 제안서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을 35 ~ 75%로 반영하여 평가하였으며, 특히 ‘□□ □□□□□□□□ 신규기획을 위한 세부분야별 전문연구 용역’과 관련하여서는 정량적 평가 배점한도 30점을 초과한 44점을 부여하는 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위반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제안서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한도 미준수 내역

(단위 : 백만 원, 점)

연 번	부서명 (현 부서명)	사업(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정량평가 배점한도	평가항목별 배 점	평가항목	비고
1	○○○○○단	경북테크노파크 ◇◇◇◇◇ 이용을 위한 회선망 사업 용역	109 ('19. 4. 11.)	10	5(50%)	• 경영상태	배점한도 초과
					5(50%)	• 부정당업자 제재 경력 등	배점한도 초과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2020. 12. 24.),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1>

연번	부서명 (현 부서명)	사업(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정량평가 배점한도	평가항목 배 점	평가항목	비고
2	○○○○○단	경북 ○○○○○○○○ 지원 사업 동영상 제작 및 홍보	60 (20. 9. 11.)	10	5(50%)	• 경영상태	배점한도 초과
					5(50%)	• 유사과제 수행실적	배점한도 초과
3	○○○○○단	2020년도 경상북도 지역 틈틈틈틈 조사분석 용역	38 (20. 10. 7.)	10	4(40%)	• 유사과제 수행실적	배점한도 초과
					4(40%)	• 경영상태	배점한도 초과
					2(20%)	• 부정당업자 제재 경력 등	
4	○○○○○단	2020년 경상북도 ㅁㅁㅁㅁㅁ ㅁㅁㅁㅁㅁ 조사분석 용역	39 (20. 11. 5.)	10	4(40%)	• 유사과제 수행실적	배점한도 초과
					4(40%)	• 경영상태	배점한도 초과
					2(20%)	• 부정당업자 제재 경력 등	
5	ㅁㅁㅁㅁㅁ단 (◇◇◇◇◇ ◇◇단)	○○○○ ○○○○○○ 해외 시장동향 및 만족도 조사 분석용역	45 (19. 2. 19.)	10	5(50%)	• 유사과제 수행실적	배점한도 초과
					3(30%)	• 경영상태	
					2(20%)	• 부정당업자 제재 경력 등	
6	ㅁㅁㅁㅁㅁ단 (◇◇◇◇◇ ◇◇단)	○○○○ ○○○○○○ 정 보망시스템 및 콘텐츠 관 리 개선 용역	45 (19. 2. 20.)	10	5(50%)	• 유사과제 수행실적	배점한도 초과
					3(30%)	• 경영상태	
					2(20%)	• 부정당업자 제재 경력 등	
7	ㅁㅁㅁㅁㅁ단	○○○○ 원스톱 시스템 개발 용역	91 (19. 9. 20.)	20	10(50%)	• 경영상태	배점한도 초과
					10(50%)	• 보유인력	배점한도 초과
8	ㅁㅁㅁㅁㅁ단	경북 ㉠㉠㉠ ㉠㉠㉠㉠ 구축을 위한 연구장비 현황조사 및 분석용역	30 (19. 11. 28.)	16	8(50%)	• 유사과제 수행실적	배점한도 초과
					4(25%)	• 보유인력	
					4(25%)	• 보유인력(참여실적 등)	
9	△△△△△ △△센터 (□□□□□단)	㉠㉠㉠㉠㉠㉠㉠ 국제 규격 인증장비 검교정	75 (19. 11. 26.)	10	5(50%)	• 경영상태	배점한도 초과
					5(50%)	• 보유인력	배점한도 초과
10	▽▽▽▽▽ ▽▽센터 (□□□□□단)	○○○○ ○○○○○○ 시 험평가기반구축사업 해외시 장 동향조사분석 용역	47 (20. 2. 27.)	10	5(50%)	• 유사과제 수행실적	배점한도 초과
					3(30%)	• 경영상태	
					2(20%)	• 부정당업자 제재 경력 등	
11	♣♣♣♣♣ ♣♣♣♣♣센터 (□□□□□단)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 고도화를 위한 ㉠㉠㉠ ㉠㉠ 안전화 방안 연구용역	29 (20. 10. 8.)	20	7(35%)	• 부유력(전문 및 학위 등)	배점한도 초과
					8(40%)	• 보유인력(인원 등)	배점한도 초과
					5(25%)	• 유사과제 수행실적	
12	△△△△△ △△센터 (□□□□□단)	WPC(Q) 15W(EPP) ▶▶▶ ▶▶▶ 장비 검교정 용역	75 (20. 10. 14.)	10	5(50%)	• 경영상태	배점한도 초과
					5(50%)	• 보유인력	배점한도 초과

연번	부서명 (현 부서명)	사업(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정량평가 배점한도	평가항목 배 점	평가항목	비고
13	♣♣♣♣♣♣ (□□□□□단)	□□□ □□□□□□□□ 신규기 획을 위한 세부분야별 전 문연구 용역	72 (20. 10. 27.)	44	4(9.1%)	• 경영상태	
					24(54.5%)	• 유사과제 수행실적	배점한도 초과
					16(36.4%)	• 보유인력	배점한도 초과
14	▽▽▽▽▽ ▽▽▽▽센터 (□□□□□단)	☀☀ 1인 미디어 스튜디오 운영 및 구축사업 용역	67 (20. 5. 7.)	10	5(50%)	• 유사과제 수행실적	배점한도 초과
					3(30%)	• 경영상태	
					2(20%)	• 부정당업자 제재 경력 등	
15	◎◎◎◎◎ ◎◎◎센터 (□□□□□단)	㉠㉠㉠㉠㉠ 확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	40 (20. 10. 5.)	20	5(25%)	• 경영상태	
					15(75%)	• 유사과제 수행실적	배점한도 초과
16	♣♣♣♣♣♣실	2020년도 상반기 경북 테크노파크 ㉠㉠㉠ ㉠ ㉠ 대행용역	26 (20. 5. 22.)	20	10(50%)	• 유사과제 수행실적	배점한도 초과
					10(50%)	• 경영상태	배점한도 초과

조치할 사항 경북테크노파크원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자 DDD와 EEE, GGG는 「인사관리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훈계처분** 하
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통보 및 주의요구

제 목 연구장비 활용방안 마련 필요
 소 관 청 경북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단
 내 용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경북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자 다양한 국책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1. 연구장비 기업활용 저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4조에 따르면 연구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경북테크노파크 「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3천만원 이상 장비 도입에 대한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을 심의하고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부서는 도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보유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활용상태를 점검하고 활용이 저조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장비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장비에 대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장비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했다.

그런데 경북테크노파크에서가 보유한 시설장비 중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장비 162종에 대한 2020년 기업지원 활용률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기업 활용장비는 58.6%로 확인 되었고, 이 중 1개 업체만 지원한 장비는 16개, 9.8%

이고 기업 활용이 전무한 장비는 67개, 41.3%로 나타났다.

[표 1] 2020년도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기업지원 현황

(단위 : 건수)

부서(팀명)	장비 보유개수	장비취득 금액(천원)	장비1개당 기업지원수 (10개이상)	장비1개당 기업지원수 (10개미만-2개이상)	장비1개당 기업지원수 (1개업체)	기업 미지원
☆☆☆☆☆팀	18	8,370,242	2	8	0	8
★★★★★★★센터	13	4,650,030	0	2	4	7
○○○○○○○○○센터	52	9,520,458	18	17	2	15
●●●●●●●●●●센터	31	3,833,009	4	20	3	4
◎◎◎◎◎◎◎◎◎센터	8	700,976	0	2	0	6
◇◇◇◇◇◇◇◇◇센터	26	3,351,880	0	3	4	19
◆◆◆◆◆◆◆◆◆팀	14	6,305,685	0	4	2	8
합계	162	36,732,280	25	57	16	67

또한 아래 [표 2]와 같이 기업지원을 위해 구축된 장비 중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장비가 38종으로 확인되어, 장비도입 시 활용성,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도입된 장비들의 기업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 2] 2020년도 3천만 원 이상의 장비중 기업에 활용되지 않는 주요장비 내역

(단위 : 천 원)

부서(팀명)	장비명	취득일자	취득금액	비 고 (2019년 현황)
☆☆☆☆☆팀 (3종)	초고속수명시험기	2015.3.26	423,000	1개 업체 지원
	복합환경챔버	2015.3.12	287,000	1개 업체 지원
	전기차 샤시부품 진동특성	2012.1.16	215,000	1개업체 지원
★★★★★★★ ★★센터 (5종)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	2017.12.12	162,000	기업활용 없음
	3차원 형상측정 마이크로	2017.11.9	75,000	기업활용 없음
	알루미늄접합부피로시험기	2019.1.14	160,000	기업활용 없음
	저진공주사전자현미경	2019.11.6	241,890	기업활용 없음
	정밀3D스캔시스템	2020.1.9	120,000	-
○○○○○○○ ○○센터(4종)	가스크로마토그래피	2016.10.14	94,500	1개 업체 지원
	압출성형물 시제품 제작	2016.10.14	365,200	기업활용 없음
	다축시험기	2016.10.31	217,400	기업활용 없음
	12스테이션 스텐트 내구성	2016.10.31	143,100	기업활용 없음

부서(팀명)	장비명	취득일자	취득금액	비고 (2019년 현황)
●●●●●●●● ●●센터(2종)	혼탁도측정기	2017.5.31	44,500	기업활용 없음
	ICE혼탁도 측정장치	2017.5.31	82,500	기업활용 없음
○○○○○○○○ ○○센터(6종)	일광견뢰도 시험기	2012.3.26	98,000	기업활용 없음
	세탁견뢰도 시험기	2011.6.20	31,200	기업활용 없음
	측색기	2011.6.17	31,900	기업활용 없음
	사염색기	2017.11.1	93,056	기업활용 없음
	사건조기	2017.11.1	148,564	기업활용 없음
	사염색기2	2018.10.1	93,056	기업활용 없음
◇◇◇◇◇◇◇◇ ◇◇센터(16종)	회로망분석기	2017.11.1	54,500	기업활용 없음
	블루투스 프로토콜 분석기	2017.10.20	51,900	기업활용 없음
	EMI수신기	2018.11.13	122,000	기업활용 없음
	전자기파 시뮬레이터	2017.11.1	132,000	기업활용 없음
	WPT평가시스템	2019.1.4	222,600	기업활용 없음
	WPC이물질 탐지용 수신코일	2018.6.22	46,000	기업활용 없음
	전력분석기	2018.12.28	35,900	기업활용 없음
	신호발생기	2018.12.28	36,600	기업활용 없음
	공진형 무선전력전송 자동화 적합성 시험기	2019.1.4	77,300	기업활용 없음
	공진형 무선전력전송 자동화 적합성 시험기(2)	2019.1.4	52,300	기업활용 없음
	무선충전 시뮬레이션 시스템	2019.5.30	140,030	기업활용 없음
	자동 파라미터 시뮬레이션	2019.11.5	30,600	기업활용 없음
	공진형 무선충전 자기장 영역 측정기	2019.10.28	35,100	기업활용 없음
	무선충전 효율 측정기	2019.11.4	52,600	기업활용 없음
	중전력 무선충전 표준시험기	2019.10.11	104,000	기업활용 없음
	휴대폰 무선충전 표준시험기	2019.12.12	118,701	기업활용 없음
◆◆◆◆◆◆◆◆ ◆◆팀(2종)	고속충격시험기	2020.2.27	708,400	
	철도 구조물 시험기	2020.3.30	181,400	

2. 연구장비 등록 부적절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0조 내지 제21조에 따르면 도입이 완료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기관 자산으로 등재하고 장비활용종합 포탈(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해당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했다.

그런데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3개 장비를 장비활용종합 포탈(ZEUS)에 등록하지 않고 누락하였다.

[표 3] 장비활용포탈(ZEUS) 미등록 장비현황(3천만원 이상)

(단위 : 천 원)

연번	장비명	취득일자	수량	취득금액	주요 사유	비고
1	사건조기	2017-05-23	1	148,564	보유기관 정보 수정(○○○연구원→경북테크노파크) 지연으로 인한 누락	○○○○○ ○○ ○○센터
2	사염기	2018-06-12	1	93,056	보유기관 정보 수정(○○○연구원→경북테크노파크) 지연으로 인한 누락	
3	사염기	2018-06-12	1	93,056	보유기관 정보 수정(○○○연구원→경북테크노파크) 지연으로 인한 누락	

또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1조 제1항에 따라 취득 후 30일 이내에 장비를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래 [표 4]와 같이 내풍성 시험테스트베드 연구장비는 최장 154일을 경과하여 등록하는 등 기업이 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지 않고 있다.

[표 4] 장비활용포탈(ZEUS) 등록 지연 주요장비 내역

연번	장비명	취득일자	ZEUS 등록일자	경과일수	비고
1	내풍성 시험테스트베드	2020-10-13	2021-03-15	154	○○○○○○○○센터
2	스프링 댐퍼 시험기	2017.12.06	2018.01.10	36	◆◆◆◆◆◆◆◆팀
3	고정밀 비파괴 내·외부 3차원 단층 측정기	2018.11.28	2019.01.09	42	
4	철도차량 대차 프레임 성능 시험기	2018.11.30	2019.01.09	41	
5	센서시험인증설비	2019.12.10	2020.01.21	42	
6	소형 주사전자현미경	2015-06-25	2015-11-23	120	
7	라미네이팅 시제품 제작설비	2016-07-31	2016-10-26	58	○○○○○○○○센터
8	면역염색시스템	2016-09-30	2016-11-14	46	●●●●●●●● ●●●●센터
9	개별환기케이지시스템	2016-09-07	2016-11-14	69	
10	중동물사육장	2016-07-19	2016-10-31	105	
11	H&E 염색시스템	2016-03-30	2016-05-23	55	
12	조직처리기	2016-03-30	2016-05-11	43	
13	자동 핵산 분석기	2015-06-24	2015-08-26	64	

14	과산화수소증기멸균기	2015-09-03	2015-10-28	56	☆☆☆☆☆팀
15	실시간 유전자 증폭분석기	2015-06-23	2015-08-26	65	
16	CO2배양기	2015.02.26	2015.05.15	79	
17	복합환경진동특성내구 시험기	2017-03-30	2017-06-12	74	
18	전기차용감성소음시뮬레이터	2015-03-24	2015-05-04	41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입주기업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북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단
내 용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92개 입주기업을 관리하면서 2018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임대료 5,185백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103백만 원을 징수(징수율 98.4%) 하였다.

「경북테크노파크 입주관리지침」 제15조에 따르면 입주기관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내 미납 시 전자메일 및 유선통화를 통해 대표자에게 납부를 촉구하고,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납부 독촉장과 공문을 1회 이상 발송하고 이를 근거로 입주기업 관리부서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으로 체납금 상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해지 후 자진퇴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북테크노파크는 미납업체에 납부안내서 등을 발송하여 미납액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후 3개월 이상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퇴거통지서를 즉시 발송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 등 10개 업체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퇴거조치 없이 납부안내서만 발송하는

조치할 사항 경북테크노파크원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주의)**
- ② 연구장비 구입 전 체계적인 수요조사 및 장비구매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도입된 장비가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공동 활용 될 수 있도록 장비활용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등으로 인해 68,681천 원이 미납되어 있다.

[표]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현황

(단위 : 원)

연번	업체명	미수총액	월임대료	연체월	비 고
1	㈜♠♠♠♠♠	6,408,210	505,950	27개월	18.6월 3개월 체납 공문발송 후 19.7월 채권추심 의뢰
2	㈜♥♥♥♥♥	23,345,750	505,140	25개월	18.6월 3개월 체납 공문발송 후 19.7월 채권추심 의뢰
3	♣♣♣♣♣♣♣	10,084,595	224,135	19개월	18.11월 3개월 체납 공문발송 후 21.4월 채권추심 의뢰
4	◆◆◆◆◆◆◆	8,908,365	224,135	17개월	19.10월 3개월 체납 공문발송 후 21.4월 채권추심 의뢰
5	♣♣♣♣♣♣♣	3,127,850	381,080	4개월	개인회생채권(채권추심불가)
6	◇◇◇	7,313,240	473,340	10개월	20.4월부터 독촉공문 14회 발송
7	㈜☹☹☹☹☹☹☹	1,433,520	232,370	3개월	
8	△△△	5,449,070	181,530	15개월	
9	▼▼▼	602,300	261,800	18개월	퇴소
10	◎◎◎◎◎◎원	2,009,080	388,690	4개월	
미납금액 합계		68,681,980			

이 중에서 ㈜♠♠♠♠♠, ♥♥♥♥♥ 등 4개 업체의 경우에는 27개월, 25개월이 연체되어 채권추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채권추심의뢰 성공 수수료로 7,578천 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 등 2개 업체는 많게는 14번의 공문만 발송하여 10개월이 연체되는 등 납부독촉 공문 발송 이외의 별다른 채권회수방안 및 징수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입주기업 체납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북테크노파크원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자 HHH는 「인사관리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하자관리 업무 소홀
 소 관 청 경북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소, ♣♣♣♣♣♣실, 卍卍卍卍실
 내 용

1. 정기하자검사 미 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10절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시설공사 등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했다.

그런데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 14일 전부터 만료일

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33건의 시설공사에 대해 최종검사를 미 시행하였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부적정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 ○○○○ ○○○센터(신축) 건축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주)와 계약하여 2018년 11월 30일 사업을 완료하였다.

[표] 공사현황

공 사 명	공사규모(연면적 ㎡)	사업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 ○○○○ ○○○센터(신축)건축공사	· 연구동 지상1층 (244.98) · 실험동 지상2층 (1268.60)	2018. 04. 20. ~ 2018. 11. 30.	2018. 12. 11. ~ 2021. 12. 10.(3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 등에 따른 공사의 종류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담보책임 존속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수급인(계약당사자)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한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4. 건축’에 따르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대형공공성 건축물²⁾의 기둥 및 내벽력은 10년 이며,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벽력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그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 부분은 5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대형공공성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산정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을 제출받아야 했다.

2) 대형공공성 건축물 :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관광집회시설, 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용도의 건축물

그런데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 ●●●●● ●●●센터(신축) 건축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산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출받아야 함에도 3년(2018. 12. 11. ~ 2021. 12. 10.)으로 산정하여 계약당사자인 ㉠㉡㉢㉣㉤(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 보증서)을 제출받는 등 건설공사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테크노파크원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아래 관련자 DDD, EEE, GGG은 「인사관리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훈계 처분** 하시기 바라며, JJJ과 KKK은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조정 금액 정산 부적정
소 관 청 경북테크노파크
관 계 부 서 ♣♣♣♣♣♣실
내 용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센터 신축공사’를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 1] 공사현황

공 사 명	공사종류	계약당사자	공사기간	비 고
●●●●●●●●●●●●●●센터 신축공사	건축공사	●●●●●●●(주) 등 2개사	2018. 03. 02. ~ 2019. 07. 25.	
	전기공사	◆◆◆◆주식회사	2018. 03. 15. ~ 2019. 07. 25.	
	통신공사	㈜▣▣▣▣	2018. 03. 15. ~ 2019. 07. 25.	
	소방공사	㈜●●●●	2018. 03. 15. ~ 2019. 07. 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제2항의 약정에 따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정산항목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인 ●●●●●●(주) 등 5개사가 2018년 11월 12일 등에 요청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변동금액에 대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아래 [표 2]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항목은 정산하여야 했다.

[표 2] 계약금액의 정산항목 및 규정

정 산 항 목	관 련 법 령
국민건강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국민연금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퇴직공제부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환경보전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그런데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센터 신축공사’의 물가변동 조정 반영금액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정산항목에 대해 물가상승분 정산조치를 하지 않아 9,376,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표 3] 물가상승분 정산 현황

(단위 : 원)

공 사 명	공사종류	반영금액	미정산금액	비 고
합 계	4건	307,138,000	9,376,000	
●●●●●●●●●●센터 신축공사	건축공사	206,850,000	5,905,000	
	전기공사	58,464,000	2,309,000	
	통신공사	23,954,000	898,000	
	소방공사	17,870,000	264,000	

조치할 사항 경북테크노파크원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부당하게 지급한 9,376,000원을 환수하시기 바라며,**(시정)**
- ③ 관련자 MMM, NNN는 「인사관리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주의처분** 하시기를 바랍니다.